

의안번호	제624호
의결 연월일	2014년 3월 일 (제328회)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4년 3월 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24
----------	-----

제출연월일 : 2014년 3월 4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코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조문 정비(안 제14조)
 - 영 제79조제1항 → 영 제7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79조제1항”을 “영 제79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①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u>영 제79조제1항</u> 별표와 같다.</p> <p>② (<u>생 략</u>)</p>	<p>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① ----- -----</p> <p><u>영 제79조</u> -----.</p> <p>② (<u>현행과 같음</u>)</p>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